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이필용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이 신설되어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설치와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의용소방대 도입에 따른 자격기준, 여성대원의 충원, 연령 고령화에 따른 대원의 정년 기준 조정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변경.

- 조례명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로 개정

나.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

- 전문의용소방대 도입근거 마련하고,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의 정원을 정례화 함.(안 제2조제4항, 제6조제3항)
- 대원(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정년을 65세로 정례화 함.(안 제10조제3항)
- 면지역 의소대의 정원의 1/3이하로 여성대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 대장의 임기개시일을 상반기 1월1일, 하반기 7월1일로 정례화 함.(안 제11조제2항)
-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 중 출동대기 근무시간을 연1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의용소방대의 자율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피복 등 지급품을 소방서장이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 유족보상금에 대한 보상액수의 정액화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
- 성과중심의 보상을 위해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 경비지원, 초상 등 차등부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 2)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정함(안 제2조)
-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 그 밖에, 및, 또는, 인, 이외, 기타 등의 자구를 알기쉬운법령 정비 체제에 맞춤.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이 신설되어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설치와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의용소방대 도입에 따른 자격기준, 여성대원의 충원, 연령 고령화에 따른 대원의 정년 기준 조정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 명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조례명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로 함.

○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

▶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 전문의용소방대 도입근거 마련하고,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의 정원을 정례화 함.(안 제2조제4항, 제6조제3항)

▶ 대원(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정년을 65세로 정례화 함.(안 제10조제3항)

▶ 대장의 임기개시일을 상반기 1월1일, 하반기 7월1일로 정례화 함.(안 제11조제2항)

▶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 중 출동대기 근무시간을 연1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유족보상금에 대한 보상액수의 정액화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

▶ 성과중심의 보상을 위해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 경비지원, 초상 등 차등부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금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조항이 신설되어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설치와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의용소방대 도입에 따른 자격기준, 여성

대원의 충원, 연령 고령화에 따른 대원의 정년 기준 조정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